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27일,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출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4.03.)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지난 2007년부터 노후 또는 유희한 향만 공간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향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른 향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향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도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당초 취지와 다른 건축물을 세우거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음.

또한 사업구역 내 다수의 부지가 준설토 투기장이거나 향만구역인 점으로 인하여 타 개발사업 대비 사업기간이 길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하여 지난 2020년 수립된 3차 향만재개발기본계획상 전체 19개 사업 중 3개 사업만이 완료되는 등 아직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현행법률상 인·허가 의제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도 미비하여 향만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를 사업취지 및 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향만관리청의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부 건축물 등의 계획 및 처분근거 등을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실시계획 등에 포함하여 향만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향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이 「항만법」에서 분법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등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여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는 등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토록 하여 조성토지등의 처분에 관한 확인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4.03.)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음